

다음의 대책은 보건국(Board of Health)에서 2019년 4월 17일부로 채택한 것으로 뉴욕시 행정법 §17-148에 따라 발표될 것입니다.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  
보건국 대책

2019년 4월 17일 보건 및 정신위생부의 보건국 회의를 통해 다음의 대책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Williamsburg) 우편번호 11205, 11206, 11211, 11249 ("질병이 발생한 우편번호")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 활동성 홍역이 발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9일 보건 및 정신위생부 위원은 윌리엄스버그 인근에 발생하고 있는 홍역 발병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공중 보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공중 보건 긴급 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법 §3.01항에 의거하여 주어진 권한에 따라 보건부 위원은 감염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 근무, 체류하는 모든 사람과 감염 지역에 거주, 체류, 근무하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어린이가 홍역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을 생성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해당 주민 혹은 어린이, 주민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그 질병에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보건부 기준에 따라 해당 주민이 이 조치에 대해 의학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는 문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법 §3.01항에 의거하여 위원이 발행한 명령은 보건부가 보건국소집을 통해 위원의 권한 행사를 지속 혹은 철회할지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보건국은 2018년 9월 이래 뉴욕시에서 300건이 넘는 홍역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그중 대다수는 감염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여전히 급속도로 새로운 발병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서화하여 해당 기록과 보고서를 수집, 취합하여 보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역은 매우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폐렴, 뇌염(뇌의 부종) 및 사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고된 홍역 사례의 대략 3분의 1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역은 연령과 상관없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어린이, 임산부,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성인은 홍역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역은 환자로부터 질병에 대한 면역이 약한 타인에게 쉽게 전염됩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곳의 공기 및 표면 위에서 최대 2시간가량 생존하며 면역이 약한 사람이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감염자가 최근에 머물렀던 장소 인근에 머무르는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무척 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높지만,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은 홍역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안전성 및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없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홍역이 어린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남아있으며 이번 발병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사라진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역 발병을 멈추기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를 유치원과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등 보건 및 정신위생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윌리엄스버그 내 감염 우편번호 지역의 높은 홍역 예방접종 미실시율로 인해 해당 지역의 홍역 발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윌리엄스버그에서 뉴욕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홍역이 발병함에 따라 이 질병이 인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고 공적인 방해 요소가 되기에 보건국은 앞에서 언급한 300건 이상의 홍역 사례 보고서를 긴급 상황 선포를 인가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감염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서 발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홍역 발병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감염 우편번호 지역에서 거주, 근무, 통학하는 모든 주민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다른 홍역 면역 대책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적 방해 요소 및 뉴욕시 행정법 17 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의 완화를 요하는 뉴욕시 행정법 §17-148의 (a) 항 혹은 (b) 항 명령에 의거하여 개인 서비스 및 서비스는 공중 보건, 복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적 방해 요소와 상황을 감소시킬 임무 혹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이로써 보건국은 윌리엄스버그 인근의 홍역 발병이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협 요인이 되므로 공적 방해 요소가 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이로써 보건국은 감염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홍역에 면역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보건부 기준에 따라 해당 주민이 이 조치에 대해 의학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는 문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감염 우편번호 지역 내에서 거주하거나 학교, 유치원, 보육 기관으로 통학하는 6개월 이상의 모든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및 MMR(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주민은 아동이 홍역 면역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부 기준에 따라 해당 아동이 이 조치에 대해 의학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는 문서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아동에게 홍역 접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이 선포에 따라 모든 주민은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에게 면역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감염 우편번호 지역에 거주, 근무, 통학하는 모든 사람이 이 발병 상황이 보건 및 정신위생부 위원에 의해 선포될 때까지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이 명령을 위반하면 해당 법률, 규칙 및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이 해결합니다.** 이 대책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 대책 발표는 뉴욕시 행정법 §17-148에 따른 것입니다.

(2019년 4월 17일 보건국에 의해 채택)